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김 승 규  
법무부장관

◎法律 第7225號

刑事訴訟法中改正法律

刑事訴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4조의2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法院은 拘束된 被疑者”를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82조의 제목 “(上訴提起後判決前拘禁日數의 算入)”을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중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通算은 判決宣告前拘禁의 1日”을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적격을 피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제214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 법원으로서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피의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동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됨에 따라, 검사의 전격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도록 되어있는 규정(제482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7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15821호

관

부

2004.10.16. (토요일)